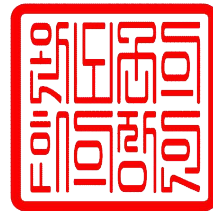


##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0일



###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2. 발 의 자 : 조 인 호 의원
3. 개정이유
  -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 비용의 지원 및 예방교육(안 제4조, 안 제5조)
- 보고·점검 및 협력 등(안 제6조, 안 제7조)

5. 조례안예고기간 : 2024. 8. 20. ~ 2024. 8. 24.

#### 6.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 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3, FAX: 061-550-5907)

#####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 7.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바.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공공시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고·점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 등)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전기·화재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